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8-69호
2018. 9. 7.(금)

선람	기관(부서)의 장

차 례

고 시(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 고시 (고시 제2018-124호) ····· 1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고시 제2018-126호) ····· 7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8-127호) ····· 8
- 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이득금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 제2018-128호) ····· 9

공 고(4)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8-687호) ····· 10
- 공 시 송 달 공 고(공고 제2018-697호) ····· 13
-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공고 제2018-698호) ····· 15
- 대덕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니터링단 모집(공고 제2018-700호) ····· 16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676호) ····· 17

공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감사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8-12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승인된「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활성화계획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계획의 개요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개요

- 계획의 명칭 :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
- 활성화 지역 및 면적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41-28번지 일원(181,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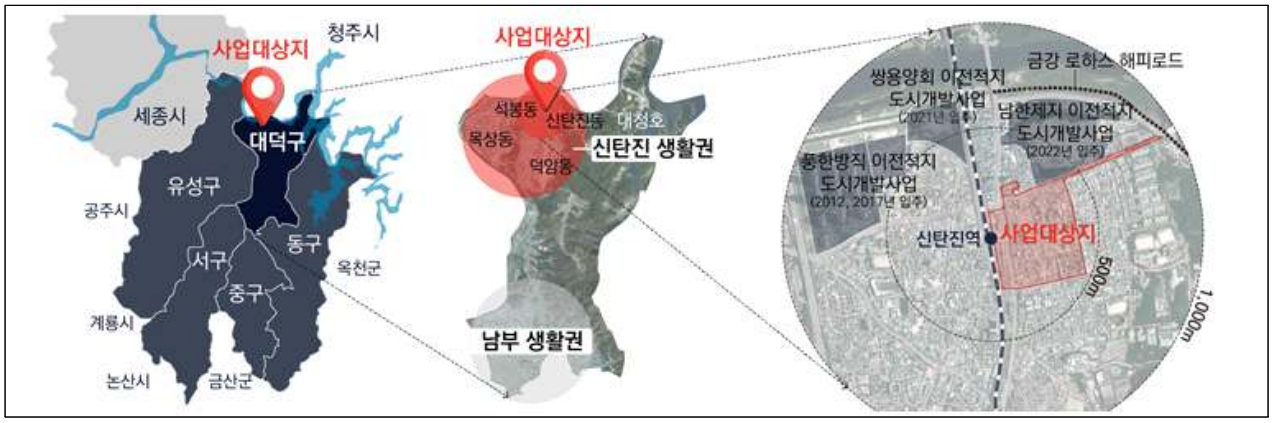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내용

○ 계획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쇠퇴한 역전 상권을 신탄진 생활권 주민들의 일터, 삶터, 놀이터로 재생
- (목표)
  - · 삶터로 재생 : 노후·유흥상권 변화기반 만들기
  - · 일터로 재생 : 상권의 체질개선을 이끌 키맨 육성하기
  - · 놀이터로 재생 : 여가문화 활성화하기

○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 사업기간 : 2018~2022년 (5개년)

- 도시재생사업계획
  · 마중물사업 : 8개 단위사업
  · 연계사업 : 부처협력사업 5개, 지자체자체사업 6개, 공공기관투자사업 2개, 민간투자사업 1개 사업

대분류	중분류	사업명	사업내용
마중물 사업	목표1. 노후·유흥 상권 변화기반 만들기	단위1. 역세권 상업가로 환경정비	• 공영주차장 확대(지하3층) 및 이벤트공간 조성 • 주요가로 및 역전광장 정비 • 현장지원센터 운영지원(인건비, 운영비 등)
		단위2. 공동체 참여형 새여울 거리가꾸기	• 거리재생 공동체 워크숍 운영 • 지역대학 연계 거리재생 실습
		단위3. 도시재생대학 운영	• 도시재생 관련 강좌 운영 • 주민공모사업 운영 • 주민협의체 등 거버넌스 운영지원 • 활성화계획 수립
	목표2. 상권의 체질개선을 이끌 키맨 육성하기	단위4.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	• 복합시설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공간 조성 • 초등학교 옆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 돌봄센터 조성
		단위5. 골목점포 살리기 프로젝트	• 기존점포 경영진단 및 컨설팅 • 점포 리모델링 지원
		단위6. 창업인 인큐베이팅	• 신규 창업인 육성 교육 및 컨설팅 • 공점포 활용 창업인 실습공간조성
	목표3. 여가문화 활성화하기	단위7. 새여울 커뮤니티센터 조성	• 문화거점공간 확장 이전 • 커뮤니티 문화장터(벼룩시장 등) 운영지원
		단위8. 금강 로하스 해피로드 연결	• 대청로 도로구조개선(자전거도로 확충) • 건강걷기 관광콘텐츠 개발(스토리텔링, 상품개발 등)
부처 협력 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노후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처리
	저출산대응 공모사업 -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 영유아 대상 돌봄 시설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다함께 돌봄사업		• 초등생 대상 돌봄프로그램 운영지원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		• 평생학습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시범사업		• 신탄진로 자전거 안전위험구간 정비
지자체 사업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협약 체결 및 공간정비 지원
	공한지 임시무료주차장 확충		• 공한지 활용협약 체결 및 공간정비 지원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 담장정비 등을 통해 집앞주차장 조성비 지원
	현장지원센터 운영지원(선투자분)		• 2018년 상반기 현장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지원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복합개발에 따른 행정청사 조성
	타슈스테이션(공공자전거) 신규설치		• 대전시 공영자전거 스테이션 신규 설치 지원
기타 사업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 역세권 상업가로 환경정비 연계 신탄진동로23번길 가공선로 지중화 추진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임대주택 등)		•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복합개발에 따른 임대주택, 상생상가 조성 추진
	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 금강 로하스 해피로드 연결 연계 대청로 도로구조 개선 및 녹지 확충

- 재원조달 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비(억원)				사업 기간
		총액	국비	지방비	기타	
총 합계		739.35	208.63	222.72	308.00	
마중물 사업	소 계	300.00	150.00	150.00	-	
	1. 역세권 상업가로 환경정비	128.50	64.25	64.25	-	18~22
	2. 공동체 참여형 새여울 거리가꾸기	3.00	1.50	1.50	-	19~22
	3. 도시재생대학 운영	8.00	4.00	4.00	-	18~22
	4.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	54.00	27.00	27.00	-	19~22
	5. 골목점포 살리기 프로젝트	3.00	1.50	1.50	-	19~22
	6. 창업인 인큐베이팅	10.00	5.00	5.00	-	19~22
	7. 새여울 커뮤니티센터 조성	84.00	42.00	42.00	-	18~22
	8. 금강 로하스 해피로드 연결	9.50	4.75	4.75	-	20~22
부처 협력 사업	소 계	15.97	8.63	7.34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0.67	0.33	0.34	-	19
	저출산대응 공모사업-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10.00	5.00	5.00	-	21
	다함께 돌봄사업	1.00	1.00	-	-	21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	0.30	0.30	-	-	19~22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시범사업	4.00	2.00	2.00	-	18
지자체 사업	소 계	48.38	-	48.38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0.40	-	0.40	-	19~22
	공한지 임시무료주차장 확충	0.40	-	0.40	-	19~22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0.40	-	0.40	-	19~22
	현장지원센터 운영지원(선투자분)	1.28	-	1.28	-	18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45.00	-	45.00	-	20
	타슈스테이션(공공자전거) 신규설치	0.90	-	0.90	-	21
기타 사업	소 계	375.00	50.00	17.00	308.00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34.00	-	17.00	17.00	19~20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임대주택 등)	201.00	50.00	-	151.00	19~22
	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140.00	-	-	140.00	21

※ 향후 세부계획(설계) 수립,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집행 계획

구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마중물 사업	국비	-	20.00	9.375	85.20	24.45	10.975	150.00
	지방비	-	20.00	9.375	85.20	24.45	10.975	150.00
	민간	-	-	-	-	-	-	-
	계	-	40.00	18.75	170.40	48.90	21.95	300.00
중앙부처 협력사업	국비	-	2.39	0.06	0.06	6.06	0.06	8.63
	지방비	-	2.34	-	-	5.00	-	7.34
	민간	-	-	-	-	-	-	-
	계	-	4.73	0.06	0.06	11.06	0.06	15.97
지자체 사업	국비	-	-	-	-	-	-	-
	지방비	-	1.28	0.30	45.30	1.20	0.30	48.38
	민간	-	-	-	-	-	-	-
	계	-	1.28	0.30	45.30	1.20	0.30	48.38
기타 투자사업	국비	-	-	-	50.00	-	-	50.00
	지방비	-	-	-	17.00	-	-	17.00
	기타투자	-	-	-	168.00	140.00	-	308.00
	계	-	-	-	235.00	140.00	-	375.00
사업비 합계		-	46.01	19.11	450.76	191.56	22.31	729.75

※ 향후 세부계획(설계) 수립,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파급효과

대분류	중분류	사업명	파급효과
마중물 사업	목표1. 노후·유흥 상권 변화기반 만들기	단위1. 역세권 상업가로 환경정비	• 불법가로주차문제 및 보행여건 개선 • 상권 내 주민·방문객 공동이용시설 제공으로 편의 증진 및 상권 이용객 증가
		단위2. 공동체 참여형 새여울 거리가꾸기	• 경관협정 등을 통한 경관관리 지속성 확보 • 지역-지역대학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단위3. 도시재생대학 운영	• 재생 분야별 활동가 육성 • 사업종료 이후에도 주민주도형 도시재생활동 유지 역량 강화
	목표2. 상권의 체질개선을 이끌 키맨 육성하기	단위4.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	•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주거기능 복합화하여 이용효율 극대화, 랜드마크 이미지 개선 • 육아 관련 서비스 제공으로 젊은 층의 정착 기회 강화
		단위5. 골목점포 살리기 프로젝트	• 기존 점포의 변화로 상권 분위기 개선
		단위6. 창업인 인큐베이팅	• 상권 내 공점포 리모델링, 신규창업인 육성으로 노후상권분위기 개선
	목표3. 여가문화 활성화하기	단위7. 새여울 커뮤니티센터 조성	• 주거-상업 전이공간에 거점 커뮤니티시설 운영하여 공간분위기 양성화 유도 • 신탄진만의 공동체문화모델 제시, 新여가문화 창출
		단위8. 금강 로하스 해피로드 연결	• 금강로하스 해피로드 및 대청호 관광객 유입 기회 증진 • 신탄진지역의 특성화, 집객 유도
부처 협력 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활성화지역 내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수준 개선
	저출산대응 공모사업 -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 저출산·고령화 관련사업 연계 추진 활성화
	다함께 돌봄사업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		• 문화를 매개로 한 공동체 활성화, 지역생활문화 창조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시범사업		• 신탄진역~금강자전거길을 연결하여 상권 유입인구 증가 유도
지자체 사업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 공영주차장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주차수요 수용 가능 • 공유주차, 내집 주차 등을 통해 노상주차, 불법주차 문화의 점진적 개선 도모
	공한지 임시무료주차장 확충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지원(선투자분)		• 현장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지원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내 노후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타슈스테이션(공공자전거) 신규설치		• 상권 내 자전거이용객 유입 유도, 레저생태문화 강화
기타 사업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 핵심보행축인 신탄진동로23번길 일대 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임대주택 등)		•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내 임대주택, 상생상가 조성
	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 신탄진상권과 접한 대청로 일원 가로정비 및 경관정비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에 관한 계획

연번	사업명	내용	비고
1	역세권 상업가로 환경정비	• 공영주차장 확대 및 이벤트공간 조성	주차장, 광장, 공동이용시설 조성
2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	• 행정복지센터, 창업지원공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청년임대주택, 지하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조성
3	새여울 커뮤니티센터 조성	• 커뮤니티센터(생활문화+공동체 교류) 조성	공동이용시설 조성

- 행위 제한 적용지역 : 해당사항 없음

○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구 분	주 체	내 용
자체 성과관리	신탄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 대덕구 전담부서	· 사업목표에 따라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모니터링 실시
국토교통부 성과평가	국토교통부 /대전시(광역지자체)	· (국토교통부) 매년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자체에 배포 → (광역지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 사업지에 대한 평가 실시하여 제출

○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구 분		내 용	구성 여부
중앙 부처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	-
	도시재생 지원기구(LH)	·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
	컨설팅단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수행	-
행정	전담조직	· 활성화계획 수립 · 단위사업 시행 총괄	구성 ('17년 12월~)
	도시재생 추진단	· 행정업무 세분화·구체화하여 사업 시행	구성 예정
	행정협의회	· 뉴딜사업 협력 및 자문 · 각종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구성 ('17년 10월~)
	대전시	· 대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총괄 지원 · 시↔구 간 행정적 협의 진행	-
도시 재생 지원 센터	대전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 도시재생사업 홍보 지원 · 주민교육 지원 · 사업추진 지원 등	구성 ('15년 6월~)
	신탄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 사업추진 총괄 · 이해관계자 간 의견 및 갈등 조정 ·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구성 ('18년 4월~)
주민	주민협의체	· 일반 주민-행정 간 가교 역할 · 주민의견수렴 및 갈등 조정	구성 ('18년 3월~)
관련기관		· 관련 단위사업별 협조 (협력사업 추진 또는 사업 위탁 등)	MOU체결 및 위탁사업 진행 등
사업추진협의회		· 활성화계획의 수립 · 주체별 의견 수렴 및 조율 등	예비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가칭 운영위원회 ('18년 2월~)

○ 사업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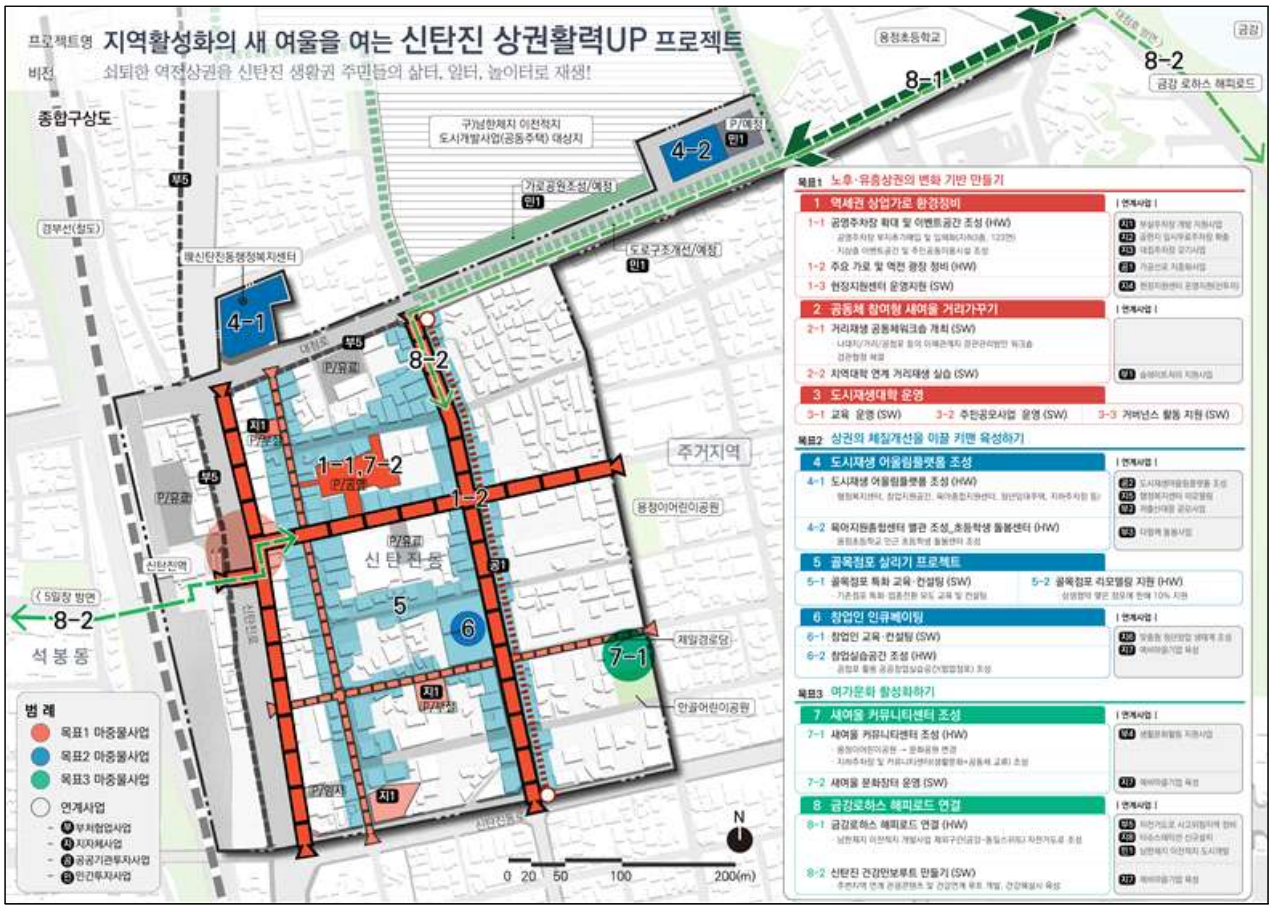

3 관련 서류 열람

○ **열람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 장소** : 대덕구청 도시재생과(☎042-608-5391~3)

신탄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070-4161-674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8-126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고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점 종류	기준점 번호	변경전		변경후		비고
		평면직각종횡선좌표		평면직각종횡선좌표		
		X 좌 표	Y 좌 표	X좌표	Y좌표	
도근점	2366	317726.03	237763.01	317725.09	237762.68	재설치
도근점	2355	317736.18	237727.91	317736.15	237728.25	〃
도근점	2354	317749.59	237685.13	317751.58	237682.16	〃
도근점	340	317765.65	237643.39	317762.01	237644.48	〃
도근점	2372	317898.13	237685.70	317899.47	237686.47	〃
도근점	2371	317910.12	237649.38	317910.67	237647.74	〃
도근점	2370	317772.91	237607.59	317773.58	237607.23	〃
도근점	2369	317682.51	237582.96	317681.56	237584.85	〃
도근점	2254	326181.96	237960.320	326181.94	23960.16	〃
도근점	〃	426489.47	238031.68	426489.64	238031.53	세계측지계 재설치
도근점	1472	326188.70	237928.57	326191.81	237928.39	재설치
도근점	〃	-	-	426499.49	237999.77	세계측지계
도근점	2262	326195.17	237898.25	326194.95	237898.29	재설치
도근점	〃	426502.76	237969.69	426502.62	237969.70	세계측지계 재설치
도근점	2240	326997.41	238246.27	326997.58	238246.56	재설치
도근점	〃	427305.04	238317.74	427305.18	238317.99	세계측지계 재설치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덕암동, 평촌동 일원
측량년월일	2018년 08월 22일, 24일
측량성과보관장소	대덕구청 민원지적과
비고	표지재질(철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8-12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오정동 307-4	오정로75번길 78-10	2018. 9. 7..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7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상서동 832-22	덕암로 156-1	2018. 9. 7.	건물신축	행정구역명(덕암동)을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8-128호

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이득금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에 의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상해요인)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의료급여법 제23조, 민법 제74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3. 공고기간: 2018.9.8.~2018.9.22.(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금액	비고
배○식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62번길 66,2**호(가양동)	우편물이 반송함에 투함 됨.	646,890원	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이득금

5. 공시송달내용 및 유의사항
   ○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체납)를 통보하오니 2018. 9. 27.(목)까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654-099192-17105 (대덕구청 의료기금(특)수입금출납원)
   ○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 및 "지방세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대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담당(☎ 042-608-6385)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8-687호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8 -45호	전력공급용 관로매설	계	한국전력 공사 대덕유성 지사	전선	아스팔트 보도블럭	245.0	105.48
		송촌동 445-3번지 일원				100.0	41.7
		송촌동 460-1번지 일원				145.0	63.78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위치도 및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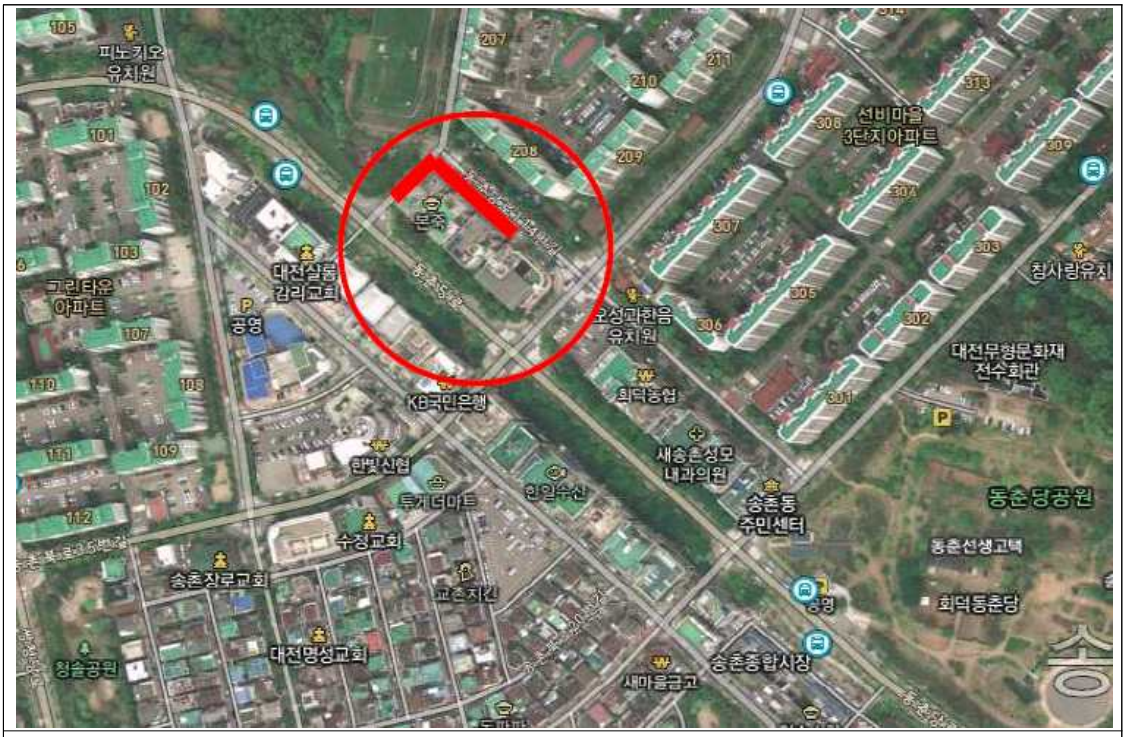

송촌동 445-3번지 일원

2018. 09.

위치도 및 현장사진

송촌동 460-1번지 일원

2018. 09.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8-6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5항에 따라 『신대1지구』지적재조사 조정금 미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대상** : 신대1지구 토지소유자 1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8. 9. 7 ~ 9. 21(14일간)
3.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 민원지적과(☎042-608-5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조 서

사업지구명 : 신대1지구 (붙임)

연번	토지소재		지목	면적 (㎡)	소유자정보		공시송달 사유
	동	지번			성명	송달주소	
1	신대동	355-7	대	119.3	변*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2길 **, ***호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8-698호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85호(2017.05.26.)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한 바 있는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명** :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2. **지구명**

지 구 명	위 치	면적(㎡)	정비유형	비고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신탄진동 일원	467,570	중심지형	

3. **주요 변경사항**
   -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로 촉진구역에 대한 계획실현성 저하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석봉2구역 등 재정비 촉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 안골 어린이공원을 현지 여건에 부합토록 문화공원으로 유형 변경
   - 존치관리구역의 건축한계선을 6m, 5m에서 3m로 조정하고 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벽면한계선 폐지
   - 신탄진 B ~ E, 1 ~ 4구역 및 석봉2·3·A구역의 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1,100%이하로 조정
4. **공람기간** : 2018. 9. 7 ~ 2018. 9. 21(14일간/공휴일 포함)
5. **공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재생과(☎ 042-608-5392)
6.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관계도서** : “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8 -700호

대덕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니터링단 모집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9조에 의거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2018년 9월 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결과와 관련된 정책정보 생산과 객관적 판단 근거 제공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 및 개선방안 검토

○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책임성 제고

2. 내용

○ 모집기간 : ~ 2018. 9. 14.

○ 모집방법 : 공개모집(공무원 및 학계, 현장전문가, 주민)

○ 모집인원 : 15명

○ 내 용 : 4기 보장계획의 계획·이행·결과점검 및 평가

- 지역욕구와 특성에 따른 4기 보장계획의 적절성 점검
- 추진사업의 계획대비 이행 사항 점검 및 조정·개선사항 점검
- 추진사업을 통한 성과지표 목표 달성 확인
- 제4기 보장계획의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 문 의 : 대덕구청 복지정책과(042-608-676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8-68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신고, 보상금 한도, 지급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라.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포획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협의

4)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협의

5) 입법예고: 2018. 09. 07. ~ 9. 027.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9.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전화 : 042-608-6862, FAX : 042-608-3834, e-mail : kuha714@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 담당자 오태훈(전화 : 042-608-68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의 예방과 보상으로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4.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5.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서 정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5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제6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에게 그 설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취약계층(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및 영세농가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7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신청 등)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은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사람이 제1항의 기간 중 지원 목적에 위배되게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5년 이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이 멸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멸실, 훼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야생동물로 인한 지원요건) 야생동물로 인해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 등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경작 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고 접수 후 즉시 피해 현장을 확인하여 피해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인 등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액 산정) ①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따라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구청장은 피해지원 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농업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 등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청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원금은 동일 농업인 등에게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제2항에 따른 피해지원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피해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13조(피해지원금 지급제외)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피해지원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피해지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11조 및 제13조에 관한 사항을 피해지원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이하 “기동포획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동포획단은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포획단원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③ 구청장은 기동포획단 운영을 위한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기동포획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16조(포획 포상금 지급 및 신청)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포획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지급액은 한 해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멧돼지: 1마리당 50,000원

2. 고라니: 1마리당 30,000원

② 포획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방지단원은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위치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피해지원금의 지급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 구 동(면) 번지			
	종류			
	설치기간 . . . ~ . . . (일간)			
	설치비용		지원금액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설치 도면포함)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관리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연락처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변경사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증빙서류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멸실,훼손 신고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자 택 :
관리번호	제 호	지 목	전, 답, 과수원, 기타( )
설치면적		설치일자	. . .
시설물의 종류			
설치금액 (100%)	- 총 금 액 (100%) : 원 - 지원금액 (60%) : 원 - 본인부담금(40%) : 원		
철거 또는 일부훼손 사 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이 멸실 또는 일부 훼손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유서, 관련사진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서

피 해 농업·임업인	주 소	시 구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 핸드폰 :		
피 해 현 황	피해지역	시 구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일간)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장 귀하

구비서류 : 피해발생 경작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조사서

피 해 경작자	주 소	시 구			
	성 명		농업·임업 인여부	여	부
	생년월일				
피 해 조 사 결 과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지역	시 구 (지목 : , 지적 : ㎡)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및 피해율	㎡ (%)	
피해지원 제외대상 여 부	법령 등에 따른 경작금지지역 여부		해당( ) 해당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등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임)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관할 동장 (관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붙 임

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 사진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결정통지서

피 해 농(임)업인	주 소	시 구		
	성 명			
	생년월일			
피 해 현 황	피해지역	시 구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지원금액		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청구서

청구인	성 명		②생년월일	
	주 소	시 구		
청구금액	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별지 제8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 및 포상금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시 구</td></tr>
<tr><td>포획기간</td><td colspan="5">20 . . . ~ 20 . . .</td></tr>
<tr><td>포획활동
장 소</td><td colspan="5">시 구 일원</td></tr>
<tr><td rowspan="2">야생동물
포획현황</td><td>멧돼지</td><td colspan="4">- 포획량 : 마리
- 사체 처리 : 자가소비( ), 소각처리( ),매립처리 ( )</td></tr>
<tr><td>고라니</td><td colspan="4">- 포획량 : 마리
- 사체 처리 : 자가소비( ), 소각처리( ), 매립처리 ( )</td></tr>
</table>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처리하였음을 신고하며, 포획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현장사진, 위치도

[관 계 법 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 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의 전시·교육
3. 삭제 <2012.2.1.>
4. 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 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6의2. 역학조사, 살처분 및 사체의 소각·매몰

7. 보호구역의 관리
8.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

제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